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40호 2022. 11. 11.(금)

【규 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6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61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규칙 제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사업소를 제1관서로 지정하여 지출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회계관리 도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명 변경 ○ 조직개편에 따라 연수청학도서관 제1관서 지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반영(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제2조, 제3조, 제4조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1.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6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3조제1항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회계법」”으로, “법 제45조제2항”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관서”를 “기타 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를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구의회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십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회의장”을 “의회사무국은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기타관서에 있어서는”을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7조”를 “제77조제4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

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35조제1항”을 “제105조제1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직무대리 규칙”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회계직원책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을 “회계직원책임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3조제2항 관련)

제1관서	기타관서
1. 보건소 2. 연수청학도서관 3. 그 밖에 「지출원」이 있는 관서 (의회, 동 제외)	「지출원」이 없는 관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u>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생략) 2.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u>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u>이란</u> ----- -----. 1. (현행과 같음)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 <u>같은 법 제45조제2항</u>-----, <u>같은 법 제46조</u>----- -----. ② ----- <u>기타관서</u> -----. ③ ----- <u>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u>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 ----- <u>사람이</u> -----

중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 재무관 및 재무관이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구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 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 . ----, -----
-----.

④ ----- 「지방회계법
시행령」 -----

----- 그렇지 않다.

⑤ -----

-----.

<단서 삭제>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

----- 따른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4. (생략)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생략)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십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3.·4.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에 -----
-----따른-----

3. -----
----- 50만원 -----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 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에게 별표 3의 전결사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 . -----

----- .

④ ----- 의장-----
----- .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

----- 훈령 제11조제1항-----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3. ----- 구청장-----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

-- .

③ -----

----- 따라 -----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해당관서의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②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

-----.

④ -----

-----,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
----- 따라 -----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제12조제3항-----

----- 따라 -----

-----.

② ---- 제12조제3항-----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 제77조제4항-----

-- 직무대리 규칙-----

----- 사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 제105조제1항 -----

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직무대리 규칙

사람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

1. ----- 회계직원책임법

2. 회계직원책임법 -----

3. (현행과 같음)

② ----- 경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10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예방 및 생활쓰레기 수거 효율성 제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춰 신설된 90리터 가정사업계 가연성 폐기물 봉투의 제작 사양을 규정

3. 주요내용

- 관련 법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춰 문구 및 기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별지1, 별지2, 별지4, 별지5, 별지8)

- 가정사업계 불연성 폐기물 배출 가능 폐기물 개정(안 제2조)
 - 가정사업계 불연성 폐기물 중
 - 형광등, 소각재, 광진, 분진, 오니 삭제
- 종량제 봉투의 규격 변경(안 별표1)
 - 125L 가정사업계 가연성 봉투 (종류·규격·무게제한) 폐지
 - 90L 가정사업계 가연성 봉투 (종류·규격·무게제한) 신설
-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사양(안 별표5)
 - 125L 가정사업계 가연성 봉투 폐지
 - 90L 가정사업계 가연성 봉투 신설
- 종량제 봉투 인쇄물 문구 변경 (안 별표2 ~ 6)
 - “자원순환과” → “청소행정과” 변경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규칙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청소행정과 (☎749-7855, 김지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연 락 처 : 전화 749-7855, FAX 749-7849
- E - mail : gorush9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리·도자기 조각 등[가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

제3조제2항 중 “전화번호 기타”를 “전화번호,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관련대장”을 “수불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의 방법에 따라”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 중 “자원순환과”를 각각 “청소행정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수령내역란, 공급내역란 및 잔량란 중 “100L”를 각각 “75L”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5의 종량제 가정사업계 봉투 중 용량 90리터인 봉투의 종류·규격 및 제작사양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종류·규격 및 제작사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중인 125리터 종량제 가정사업계용 봉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제작하고,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및 사용한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색상 및 재질(제3조 관련)

1. 종량제 봉투의 종류·규격·무게제한

종 류		용량 (ℓ)	규격(가로×세로/cm) ¹⁾		무게제한 ²⁾	비 고
			일반형	끈 삽입형		
일반용 봉투		5	26× 46.5	26× 39	—	
		10	33× 56.5	33× 49	—	
			36× 53.5	—	—	재사용 봉투에 한함
		20	42× 69.5	42× 62	—	
			45× 65.3	—	—	재사용 봉투에 한함
		50	56× 91.5	56× 85	13kg 이하	공공용 봉투 포함
		75	65× 103.5	65× 99	19kg 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0	42× 69.5	42× 62	—	
가정사업계용 봉투	가 연 성	30	48× 78.5	48× 73	—	
		60	60× 97.5	60× 90	15kg 이하	
		90	67× 111.7	67× 106	22kg 이하	
	불 연 성	30	48× 78.5	48× 73	25kg 이하	
		60	60× 97.5	60× 90	25kg 이하	

1)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 실제 사용할 종량제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형 봉투 여분의 길이 계산식

-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 봉투의 길이 : $[\{반지름(r) \times 반지름(r) \times \pi\} \div 봉투용량] + 지름(d)$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50ℓ 이상 종량제 봉투의 경우 폐기물 배출 밀도를 최대 0.25kg/ℓ로 설정하여 무게제한 값을 산출
다만,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방지를 위해 가정사업계용 봉투(불연성)는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25kg로 설정

2.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재질

구 분	공공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정사업계용 봉투(가연성)	가정사업계용 봉투(불연성)
색 상	청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백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녹 색 (투명 또는 옅은 색상)	황 색	회 색
재 질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PP마대

[별표 4]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로 이용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쓰레기 봉투는 저녁 내 집(상가) 문 앞에 배출하셔서
수거합니다.

☞ 종량제봉투 배출 시간

월(Mon.), 수(Wed.), 목(Thu.), 금(Fri.), 일(Sun.)

일몰 후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 표시 및 제작사양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20.3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24.1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30 ℓ) — 가정사업계용(타는쓰레기) —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60 ℓ) [무게제한 : 15KG 이하] — 가정사업계용(타는쓰레기) —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58.2cm	2. 처리 대상 폐기물 -이불, 카페트, 의류, 인형, 신발, 가방, 폐장판, 페스티로폼, 노끈, 폐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73.4cm	2. 처리 대상 폐기물 -이불, 카페트, 의류, 인형, 신발, 가방, 폐장판, 페스티로폼, 노끈, 폐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48cm		60cm

26.3cm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84.4cm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90 ℓ) [무게제한 : 22KG 이하] — 가정사업계용(타는쓰레기) —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2. 처리 대상 폐기물 -이불, 카펫, 의류, 인형, 신발, 가방, 폐장판, 페스티로폼, 노끈, 페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67cm

※ 가정사업계용(가연성)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일반형 봉투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30ℓ)

[무게제한 : 25KG 이하]
-가정사업계용(타지않는 쓰레기)-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2. 처리 대상 폐기물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의 건축폐자재 및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73cm

48cm

구의 문장
종량제봉투(60ℓ)

[무게제한 : 25KG 이하]
-가정사업계용(타지않는 쓰레기)-

1. 처리요령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

※ 신고처 : 업 체 명 ☎ *****

2. 처리 대상 폐기물
-폐벽돌, 폐콘크리트 등의 건축폐자재 및 유리, 도자기 등과 같은 불연성 폐기물

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행정과
(전화:)

품질인증표시

90cm

60cm

※ 가정사업계용(불연성): 끈삽입형 P.P마대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봉투 · 스티커)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업형태	슈퍼마켓() 아파트관리사무소() 기 타()			
※ 해당란에 ○표하고 기타는 영업형태를 상세히 기재				
점포규모	평		봉투적재창고	평
[점포약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 스티커)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도장				

(종량제 봉투 · 스티커)판매소지정증

① 지 정 번 호 :

② 상 호(명 칭)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성 명(대표자) :

⑤ 생년월일 :

⑥ 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 스티커)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변 경 사 항

년 월 일	변 경 내 용	확 인 (인)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스티커) 진열장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3. (종량제 봉투·스티커) 공급을 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공급하려 할 경우(불법 제작·유통 사례 예방)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판매소를 지정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변 경 사 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상호·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소 지정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스티커)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				
판매자	상 호		지 정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폐업(휴업)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폐업·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원본)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8호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신고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신고내용	발견일시			
	발견장소			
	행위내용 (구체적으로)			
	행위자 인적사항 (성명 및 주소 또는 차량번호)			
	증거물 목록			
위와 같이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 ----- ----- ----- <u>다른</u> ----- ----- ----- -----.
1. 일반폐기물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u>종량제봉투</u> 에 담아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일몰 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1. ----- ----- <u>종량제 봉투</u> ----- ----- ----- ----- ----- ----- -----.
2. 가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 · 가연성)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청라사업소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이 금지된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2. ----- ----- ----- ----- ----- ----- ----- -----

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가정사업계용봉투(불연성·가
연성)에 담아 수거·운반 처
리대행업체에 배출 일시, 장
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유리·형광등·도자기 조
각 등과 소각재, 광재, 분
진, 오니 등[가정사업계폐
기물(불연성)]

다. (생략)

3.·4. (생략)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
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인천
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
다)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
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
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
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
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전
화번호 기타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현행과 같음)

나. 유리·도자기 조각 등[가
정사업계폐기물(불연성)]

다.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
화번호, 그 밖의 -----
-----.

단투기 등의 신고자는 사진·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u>의한</u>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u>기타의 방법에 따라</u>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u>의한</u> 무단투기 등의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 ----- <u>따른</u> ----- ----- -- <u>그 밖의 방법으로</u>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u>따른</u> ----- -----.
---	---